

Title :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실천사항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실천사항



TOKAI CARBON KOREA

Title :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실천사항

1.0 목적 (PURPOSE)

이 **실천사항**은 (주)티씨케이(이하 '회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SCOPE)

하도급거래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등을 사전 심의한다.

3.0 DOCUMENT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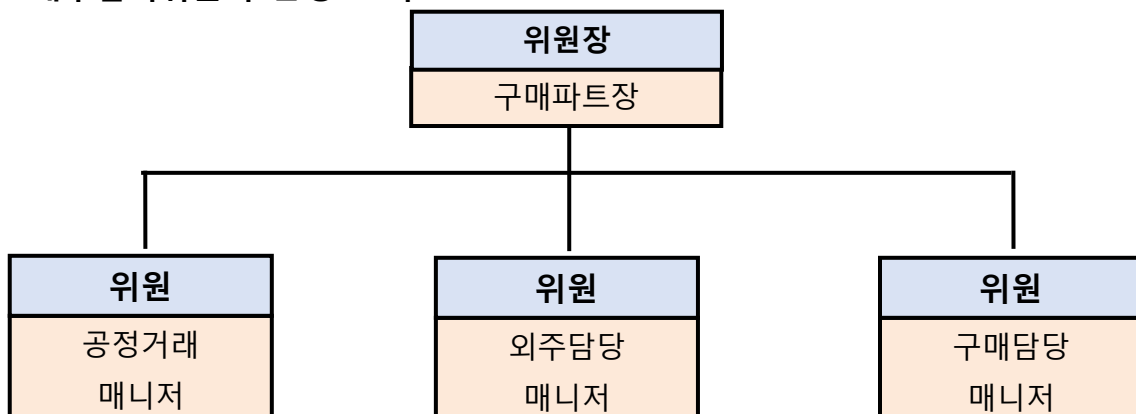
3.1 관련 문서 (Reference Documents)

Document Number	Document Title
QCI-1409B-001	내부심의위원회 회의록
QCP-1401A	구매관리절차서

4.0 책임 (RESPONSIBILITIES)

Who	Responsibilities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에 대한 방침을 설정한다.
위원	위원회에서 부여된 안건을 심의한다.

5.0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조직도



Title :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실천사항

6.0 위원회 구성 및 운영

6.1.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티씨케이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6.1.2 “내부심의위원회”는 구매 **파트장**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6.1.3 **구매파트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자 3 人이상의 위원(**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와 같은 **외부전문가** 또는 품질 등 **유관 파트장**을 선임할 수 있다.

6.1.4 위원장은 매년 1 회 조직 변경 등 반영하여 운영하고 년중 조직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구매 **파트장**(또는 **임원**)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6.1.5 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6.1.6 위원회는 필요시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6.1.7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그룹에 건의한다.

6.1.8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 없음”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6.1.8 내부 심의위원회는 회사의 직접사업연도 하도급거래 금액에 대한 수급 사업자별 당해 사업연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Title :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실천사항

직전 사업연도 하도급거래 금액	비율
1,000 억원 미만	10%
1,000 억원 이상 5,000 억원 미만	5%
5,000 억원 이상 1 조원 미만	2%
1 조원 이상	1%

6.2 심의 내용

6.2.1 “내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6.2.1.1 가격결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하도급 협력사에 대해 거래기본계약서 작성,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가격결정 등 법규에 대한 적법성여부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가격결정 심의는 건별 온라인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그룹(또는 파트)의 임원은 결재 권한을 위원에게 위임 할수도 있음

- 구매단가 결정 시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준수

의무 사항	금지 사항
1. 합리적, 현실적 기준 반영	1.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인하
2. 반드시 단가 합의서 첨부	2. 협력사에 인하 목표 일방적 할당
3. 사양 변경, 설계 변경분 반영	3. 내부 경영목표 미달 사유로 인하
4. 공급원가변동분 단가 반영	4. 단가인하 시 기발주분 소급적용
5. 운송조건변경 시 물류비 반영 등	5. 당사에 유리한 환율, 결제 화폐 적용
	6. 객관적 근거 없는 인하 (협력사 영업이익 기준 등)

Title :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실천사항

	7. 물량 약속 불이행 또는 비거래 업체의 비정상 견적 이용 인하 등
--	--

6.2.1.2 업체등록 심의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하도급거래 협력사(신규등록 협력사 포함)에 대해 등록 심의, 등록 취소에 대한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 및 탈락업체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등을 심의한다.

1) 심의

- 선정일로부터 15 일 이내 결과를 선정 업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으로 개별 통지한다
- 탈락 업체에게는 15 일 이상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이의신청업체에 재심의 후 결과 통보

2) 등록 취소

- 등록 취소된 업체에는 사유를 기재 통보하고,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 기간 내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의신청업체에 재심의 후 결과 통보

6.2.1.3 기타 하기의 사항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한다.

- 부당한 특약조건 설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여부,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특정업체 물품 등을 사용 지정 불가 등

6.3 사후관리

6.3.1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온라인 심의 회의록(결재사본등) 및 오프라인 회의록(별지 서식)을 회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위원의 결재를 득한다.

6.3.2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Title :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실천사항

REVISION SHEET

Revision	Date	Description of Revision	Owner
0	23.10.01	이 규정은 23 년 10 월부터 시행한다.	
1	24.06.12	일부 내용 변경	김경진
2	24.07.09	양식 최신본으로 업데이트	김경진
3	25.03.13	조직변경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1) 5.0 항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조직도 2) 6.0 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복진성
4	25.5.30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내용 추가 1. 목정 문구 수정 (지침 → 실천사항) 6.1.1 기본원칙 내용 추가 6.1.3 구매파트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자 3 人이상의 위원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와 같은 외부전문가 또는 품질 등 유관 파트장을 선임할 수 있다.	김경진